『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유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변	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운용관리업무)	제3조 (운용관리업무)	근퇴법 제28조 개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안 반영
1~3. (생략)	1~3.(현행과 같음)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	
5~6. (생략)	5~6.(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4~6조 (생략)	제4~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	근퇴법 시행령 제26
방법별 정보의 제공)	별 정보의 제공)	조 개정안 반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	
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	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	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	
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	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	
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	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	
0.40.41136	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8~10조 (생략)	제8~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부담금의 계산 및 납입)	제11조 (부담금의 <mark>산정</mark> 및 납입)	근퇴법 시행령 제13
		조 개정안 반영
제12~17조 (생략)	제12~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제18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근퇴법 제17조 개정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안 반영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	
기관에 전달하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관리기관에 전달하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	
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	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금	
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	하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달합니다.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합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은행은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	⑥ 은행은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급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 되면 그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 되면 그 다음 영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	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동의를	
의 동의를 받아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받아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가	등을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해당	직연금제도의 계정등, 가입자 명의의 개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 또는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나 가입자 명의의	
가입자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관에 입금	
관에 입금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게40조 (야드 및 다니게고)	계40조 (야드 아르 다니게고)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b>제19조 (양도·<mark>압류·담보제공)</mark></b>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근퇴법 제7조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1(1) /[집사는 이 제도의 답어를 닫을 낸다를	~.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반영 
-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② (현행과 같음)제20~37조 (현행과 같음)부칙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반명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20~37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37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그티버 테20조 개저

은행은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연금

회계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근퇴법 제28조 개정

안 반영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유효기일 : 2024.07.05 ~ 2024.07.31

은행은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연금

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를 다음의 기

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리업무 위탁기관 :	□ 연금회계업무 위탁기관 :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에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적용시기 명확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4
	(50%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율이 사회적	조의2 개정안 반영
	기업 이외의 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del>                                    </del>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보다 높을	
	경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인 0.10%를 적용	
	<mark>합니다.)</mark>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	
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	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	
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	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	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빙서	   적용시기 명확화
서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의 50% 할	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	극중시기 중복되 
인율을 적용합니다.	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의 50%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④~⑦ (신설)	④ 중소기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조의2 개정안 반영
	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	
	소기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	
	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적립금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자	
	산평가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10%할인	
	율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2항 내지 제4항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⑦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생략)	⑧ (현행과 같음)	   항 체하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근퇴법 제28조 개정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	안 반영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 - · · · · - · · · · · · · · · · ·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 '' '' '' '' '' '' '' '' '' '' '	
1. (생략)	C	
2. 정기 예·적금	··(ᆫᆼᅴ ᇀᆸ)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 예·적금, 이율보증형	
2. 0.1 -11 -10	보험, 원리금보장 ELB 등)	
3~9. (생략)	3~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지2)	(별지2)	
		근퇴법 제28조 개정 
그녀그 사후 비 내저거의 기스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기준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기준	안 반영
I ~Ⅲ. (생략)	I~Ⅲ. (현행과 같음)	안 반영
I ~Ⅲ. (생략) Ⅳ.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 <mark>회계</mark> 에 관한 사항	안 반영
I ~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I ~ II.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안 반영
I ~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안 반영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안 반영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I~II.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안 반영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I~II.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안 반영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안 반영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안 반영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근퇴법 제17조 개정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I~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I ~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항	I~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근퇴법 제17조 개정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생략)	I~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근퇴법 제17조 개정
I ~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항	I~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근퇴법 제17조 개정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생략)	I~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근퇴법 제17조 개정
I ~ II.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생략)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	근퇴법 제17조 개정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생략)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 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적립금이 최소	근퇴법 제17조 개정
I~Ⅲ. (생략) IV.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생략)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생략)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생략)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 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I ~Ⅲ. (현행과 같음)  IV. 기타 연금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3. (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 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근퇴법 제17조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근퇴법 시행령 제32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조 개정안 반영
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	
1. 집합교육	의 발송	
2. 온라인(web)교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	
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	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 게시	
	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	
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	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	
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	다.	
우를 포함합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	제3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	
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	다.	
으로 실시합니다.		
제7~9조 (생략)	제7~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면책)	제10조 (면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	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것으로 합니다.	
제11~14조 (생략)	제11~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	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과 같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유효기일 : 2024.07.05 ~ 2024.07.31

제16조 (생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신	<b>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b> 』	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7 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안 반영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	
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	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	
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도·압류·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	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	
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	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	
(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 () (청해고 가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14조 (생략)	제8~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조 개정안 반영
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	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	
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	
는 그에 따릅니다.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	
	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제17조 (양도· <mark>압류</mark> ·담보제공)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니다.	없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중도해지)	제18조 (중도해지)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⑤ (생략)	①~⑤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1	1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	⑥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9~21조 (생략)	제19~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탁의 종료)	제22조 (신탁의 종료)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	조 개정안 반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	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	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36조 (생략)	제23~36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행합니다.	다. 단, 별지1 제2조의 3항 및 5항의 중소·사	
	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스스크이 지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② (생략) ③ 그요. 도비 자자이 이즈히 사하저기	①~② (현행과 같음)	적용시기 명확화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우에는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	출한 날의 익일부터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	   근퇴법 시행령 제24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 이외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조의2 개정안 반영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	
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	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2항의 자	

서는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의 50% 할 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 인율을 적용합니다. 용합니다. ⑤ 중소기업의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 ⑤~⑦ (신설) 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 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 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소 기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 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3항 내지 제5항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⑦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현행과 같음)

유효기일: 2024.07.05 ~ 2024.07.31

제3조 (생략)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	근퇴법 시행령 제26
방법별 정보의 제공)	별 정보의 제공)	조 개정안 반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	
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	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	
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	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	
	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7 (생략)	제7조의2~7 (현행과 같음)	
제8~15조 (생략)	제8~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급여의 지급)	 근퇴법 제17조 개정
①~③ (생략)	①~③ (생략)	안 반영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	
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mark>또는 중소</mark>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합니다.	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반영
니다.	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35조 (생략)	제18~35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합니다.	다. 단, 별지1 제3조의 2항 및 4항의 중소·사	
	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적용시기 명확화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우에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	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 이외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근퇴법 시행령 제24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조의2 개정안 반영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	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서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의 50% 할 인율을 적용합니다.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운 용관리수수료의 5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을 걱정됩니다.	④ 중소기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호	
④~⑦ (신설)	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 L E )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	
	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	
	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소	
	기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	
	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	
	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수료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항 체하
ul =1.	11. (현행과 같음)	
	우선 순위로 합니다.	
9. (생략)	집합투자증권 내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10. 제4호 내지 제8호의 동일 유형내에서는	
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	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8.3호 내지 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	정운용방법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성되거나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	
	8.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	
8. (신설)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60년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용방법	
3. (신설)	ㅗㅁ, 횬디ㅁㅗᆼ ㄸሆ ᆼ/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	
O'I *II 7 LI	보험, 원리금보장 ELB 등)	
1. MINIF 2. 정기 예·적금	1. Milvir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 예·적금, 이율보증형	
매식 아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것으로 합니다.   1. MMF	
영구에는 다음 각 오의 문자대로 자신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는 다음 즉 오의 문자대로 자신을 배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적립금자전의 배적군지를 정하지 아니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금자선의 매격군시들 정아시 아니면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① 계약시 제16호에서 가갑자가 자신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안 반영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b>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b>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	근퇴법 제28조 개정
<del> </del>	제4조 (저리그T나나이 메카스 니)	
④ (생략)	® (현행과 같음) 	   항 체하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등을	
	⑦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중축 애킹일 경우 가장 높은 구구표 일인할   을 적용합니다.	
	아어 식용합니다. 나면, 제28 내시 제48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2항 내지 제4항에	
	역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정기적에 대해 군중된다구구표 10%달린뀰달 적용합니다.	
	⑤ 적립금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자산 평가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10%할인율을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이오 저요치지 아스니다	

제1~4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교육내용)	제5조 (교육내용)	근퇴법 제17조 개정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	① 사용자가 은행에게 위탁할 교육 내용은	아 반영
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ŭ 18
1~3. (생략)	1~3.(현행과 같음)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	
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항	항	
5~12. (생략)	5~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근퇴법 시행령 제32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	① 은행은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조 개정안 반영
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도 제공한 한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1. 집합교육	발송	
2. 온라인(web)교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	
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	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 게시(제5조제1	
	항제1호부터 제7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	② 제1항제1호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	
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	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우를 포함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	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제3	
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호의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		
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		
으로 실시합니다.		
제7~9조 (생략)	제7~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면책)	제10조 (면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	②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	
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	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	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합니다.	
제11~14조 (생략)	제11~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은행은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과 같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7 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생략)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 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업무를 수행합니다. ③~④ (생략)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 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퇴법 제7조 개정 안 반영
제8~14조 (생략)	제8~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⑦ (현행과 같음)	근퇴법 시행령 제17 조 개정안 반영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니다.	없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중도해지)	제18조 (중도해지)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⑤ (생략)	①~⑤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9~21조 (생략)	제19~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탁의 종료)	제22조 (신탁의 종료)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	조 개정안 반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	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	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는 그에 따릅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36조 (생략)	제23~36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합니다.	다. 단, 별지1 제2조의 3항 및 5항의 중소·사	
	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적용시기 명확화
	THE COUNTY OF THE MEE OF THE MEE	

우에는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의 5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⑤~⑦ (신설)

출한 날의 익일부터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제2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⑤ 중소기업의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 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소 기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 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3항 내지 제5항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 ⑦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24 조의2 개정안 반영

적용시기 명확화

근퇴법 시행령 제24 조의2 개정안 반영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6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	근퇴법 시행령 제26
방법별 정보의 제공)	별 정보의 제공)	조 개정안 반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	
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	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	
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	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	
	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6 (생략)	제7조의2~6 (현행과 같음)	
제8~14조 (생략)	제8~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급여의 지급)	제15조 (급여의 지급)	근퇴법 제17조 개정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안 반영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	
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니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한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가입자 명의의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	
기관에 전달합니다.	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니다.	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T	T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	
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	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	
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	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	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당되는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근퇴법 시행령 제18
	금액 이하로 합니다.	조 개정안 반영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31조 (생략)	제17~31조 (현행과 같음)	
	. (==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합니다.	다. 단, 별지1 제3조의 3항 및 5항의 중소·사	
	회적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	
	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적용시기 명확화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우에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	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근퇴법 시행령 제24
	기업 이외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조의2 개정안 반영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적용시기 명확화
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		
서는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의 50% 할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운	
000 705010	오기기소소그이 500 창이오오 권으셨니다	
인율을 적용합니다.	용관리수수료의 5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7 - LU 1 - L - L - L - L - L - L - L - L - L -
인율을 적용합니다. ⑤~® (신설)	⑤ 중소기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호	근퇴법시행령 제24
	⑤ 중소기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근퇴법시행령 제24 조의 2 개정안 반영
	⑤ 중소기업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각호	

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소 기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 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 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적립금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자산 평가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10%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3항 내지 제5항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 ⑧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MMF
- 2. 정기 예·적금
- 3. (신설)
-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8. (신설)
-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 8. 3호 내지 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 9. (생략)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 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MMF
-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 예·적금, 이율보증형 보험, 원리금보장 ELB 등)
-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 용방법
-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8.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되거나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 정운용방법
- 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 10. 제4호 내지 제8호의 동일 유형내에서는 집합투자증권 내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근퇴법 제28조 개정 안 반영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항 체하
제5조 (가입자 교육)	제5조 (가입자 교육)	근퇴법 시행령 제32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1.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2. 온라인(Web)	발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	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	
우 사용자 및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용자 및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	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송부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로 합니다.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기업형IRP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5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안 반영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	
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압류·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2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	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	
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	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③(생략)		
제7~13조 (생략)	제7~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근퇴법 시행령 제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17조 개정안 반영
행은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이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⑧ (현행과 같음)	
②~⑧ (생략)		
제15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니다.	공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중도해지)	제17조 (중도해지)	근퇴법 시행령 제
①~⑤ (생략)	①~⑤ (현행과 같음)	17조 개정안 반영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은행은	
행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	
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에 따릅니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19조 (생략)	제18~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 (신탁의 종료)	제20조 (신탁의 종료)	근퇴법 시행령 제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은행은 운용관	17조 개정안 반영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	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32조 (생략)	제21~32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합니다.	단, 별지1 제2조의 3항 및 5항의 중소·사회적	
	기업 수수료할인 관련 사항은 2024년 4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	저오니기 떠하시
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	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적용시기 명확화 
우에는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생략)	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	근퇴법 시행령 제
	의 기업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	24조의2 개정안 반
	준을 적용합니다. (현행과 같음)	영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유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	
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	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	
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	우에는 제출한 날의 <mark>익일</mark> 부터 제1항의 자산관	
서는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의 50% 할	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	
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⑤ ~⑦ (신설)	⑤ 중소기업의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	
	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	
	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중소기	
	업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하	
	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3항 내지 제5항에 중복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	
	합니다.	
	⑦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개인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	말합니다.	
다.		
가. (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	
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	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차. (생략)	   다~차.(현행과 같음)	
1~시. (8곡) 2~10. (생략)	2~10. (현행과 같음)	
2~10. (8 년) ② (생략)	2~10.(현영의 ᇀ급) ② (현행과 같음)	
② (o i)	(선생기 토리)	
제3~6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근퇴법 시행령 제26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정보의 제공)	근퇴법 시행령 제26 조 개정안 반영
<b>용방법별 정보의 제공)</b> ① (생략)	<b>정보의 제공)</b> ① (현행과 같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정보의 제공)① (현행과 같음)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① (생략)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 니다.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한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현행과 같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13. (생략) ③~⑥ (생략)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13. (생략) ③~⑥ (생략)  제7조의2~6 (생략)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6 (현행과 같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13. (생략) ③~⑥ (생략)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 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13. (생략) ③~⑥ (생략)  제7조의2~6 (생략)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1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6 (현행과 같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	안 반영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현행과 같음)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	7.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	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	
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 중	
유에 해당되는 경우.	도인출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근퇴법 시행령 제18
	금액 이하로 합니다.	조 개정안 반영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31조 (생략)	제17~31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행합니다.		
(별지1)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 (수수료의 징수)	근퇴법 시행령 제24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	조의2 개정안 반영
가 부담합니다.	니다.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신설)	10. 적립금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자산평	
	가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10%할인율을 적	
	용합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제외)를 운용	
	하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평가액	
	에 대해 운용손익수수료를 징수합니다.	
1~5 (신설)	1. <mark>운용손익수수료란</mark> 적립금의 운용손익과 관련	
	된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손익에 연	
	동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	
	오 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mark>디폴트옵션 기본</mark>	
	수수료율에 손익수수료율를 할인하거나 할증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운용손익	
1~5 (신설)	하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평가액에 대해 운용손익수수료를 징수합니다.  1. 운용손익수수료란 적립금의 운용손익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손익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	

에 따라 할증한 운용손익수수료는 디폴트옵션 외의 상품(미운용 현금성자산 포함)을 운용할 때 징수하는 제3항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2. 운용손익수수료는 가입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 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동일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 중일 경우에 적용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디폴트옵션 기본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디폴트 옵션 기본수수료율은 다음와 같이 정합니다.

적립금	수수료율	
자산평가액	일시부담금	개인부담금
1억원 미만	0.28%	0.06%
1억원 이상	0.26%	0.05%

4. 손익수수료율은 기준지표 대비 실제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운용수익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운용수익률 기준	할증·할인수수료
운용수익률≤기준지표	0.02%p 할인
운용수익률>기준지표	0.02%p 할증

4의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에 따라 운용수 익률이 기준지표를 상회하더라도 음의 수익률 발생시 손익수수료는 할인됩니다.

# <제4호를 반영한 운용손익수수료율 적용 예시>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일시부담금		개인부담금	
	1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1억이상
초과성과(A)	0.30%	0.28%	0.08%	0.07%
동일(B)	0.26%	0.24%	0.04%	0.03%
미달성과(C)	0.26%	0.24%	0.04%	0.03%

\*기준지표가 0보다 작을 경우: 운용손익이 0이 상일때 A요율, 기준지표이상~0미만일때 B요율, 기준지표 미달일 때 C요율 적용

5.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지표란 운용손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익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로서, 부산은행에서 판매중인 퇴직연금 펀드 중 상품위험그룹별 디 폴트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상품위험 그룹	기준지표
저위험	부산은행에 라인업된 위험등급 5등급 펀드의 직전1년 평균수익률
중위험	부산은행에 라인업된 위험등급 4등급 펀드의 직전1년 평균수익률
고위험	부산은행에 라인업된 위험등급 2~3등급 펀드의 직전1년 평균수익률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합니다.
- 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⑤ (신설)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MMF
- 2. 정기 예·적금
- 3. (신설)
- 3.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4.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5.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6.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8. (신설)
-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 8. 3호 내지 6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 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 9. (생략)

② (생략)

#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합니다.
- 1. MMF
- 2. 원리금보장상품(정기 예·적금, 이율보증형보험, 원리금보장 ELB 등)
-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 방법
- 4.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5.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 6.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8.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 되거나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 용방법
- 9.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 10. 제4호 내지 제8호의 동일 유형내에서는 집 합투자증권 내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 11.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근퇴법 제28조 개정 안 반영

항 체하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164 (심의일자 2024.07.05)

제5조 (가입자 교육)	제5조 (가입자 교육)	근퇴법 시행령 제32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	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	
1. 집합교육	송	
2. 온라인(Web)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교부・우편・전자우편에 의한 서면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교육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⑤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	자 및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	
로 은행이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함으로써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	
은행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	니다.	
다.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개인형IRP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변경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근퇴법 시행령 제17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조 개정안 반영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가. (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			
설정하려는 자	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차. (생략)	다~차.(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 (생략)	제3~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안 반영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	② 은행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			

	T	<del> </del>
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	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	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	
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도·압류·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	운용지시・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	
(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7~15조 (생략)	제7~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근퇴법 제7조 개정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안 반영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니다.	없습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32조 (생략)	제17~32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	이 계약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	
합니다.	다.	
(별지1)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수수료)	제2조 (수수료의 징수)	근퇴법 시행령 제24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조의2 개정안 반영
④ (신설)	④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	
	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	
	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